

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8. 23.(월) 0시 ~ 9. 5.(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①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쥘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팔레트, 주짓수, 해동검도, 태권,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팅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기원(棋院), 안마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

- 백신접종 인센티브 전면 보류

마. 처분사유 : 풍선효과 및 휴기철 등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300만원 이하), 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전라남도지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8. 23. ~ 9. 5.)

《완화 불가능한 조치》

- ▶ 예방접종자 포함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
-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적용

| 구분 |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인원을 4명(영·유아 포함)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 기타 모임·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집회) 50명 이상 금지 ▶ (행사) 50명 이상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
| ② 1그룹 시설 | |
|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
| 콜리텍무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확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 홀덤팝·홀덤게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확인 의무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

| 구분 |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
|-------------------------------------|---|
| ③ 2그룹 시설 | |
| 식당·카페· 편의점 (일반음식, 휴게, 제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²이상) ▶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노래(코인)연습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공용물품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 수면실 이용금지 |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m²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 운영금지(단, 수영장은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④ 3그룹 시설 | |
| 학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²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 구분 |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
|-------------------------|--|
| 영화관·공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 독서실·스터디카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
| 결혼식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딩홀별 4㎡당 1명 + 100명 미만 * 동시예식(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명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 장례식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소별 4㎡당 1명 + 50명 미만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 운영금지 ▶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 유원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 오락실·멀티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중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 ▶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

| 구분 |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
|-------------|--|
| PC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
| ⑤ 기타 시설 | |
| 스포츠경기(관람)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20% ▶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미술관·박물관·과학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실외체육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 운영금지 |
| 숙박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전 객실의 3/4 운영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 파티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 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인원의 50%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키즈카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

| 구분 |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
|------------|--|
| 돌잔치전문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가능 |
| 전시회·박람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 이·미용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 국제회의·학술행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 종교시설 방역수칙 | |
| 종교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 사업장 방역수칙 | |
| 사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 물류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안내 |

| 구분 | |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
|--------|----------------------|------------------------------|
| | 콜센터 |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 다중이용시설 | | |
| |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